



광 양 시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시 G 보

제28호 2026. 7. 15.(수)

입법예고

광양시 공고 제2026-1615호
광양시 공고 제2026-1629호

「광양시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전부개정규정안 입법예고 .. 1
광양시 위생업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
예고 3

고 시

광양시 고시 제2026-185호
광양시 고시 제2026-187호

시도 대1호선 도로구역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변경)고시 5
광양 도시관리계획(와우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
도면 고시 9

광양시 고시 제2026-188호
광양시 고시 제2026-189호

광양시 도로구간(1차 종속도로) 설정 고시 16
도로명주소(건물번호) 개별 고시 19

공 고

광양시 공고 제2026-1632호
광양시 공고 제2026-1634호
광양시 공고 제2026-1653호

공시송달공고 21
공시송달공고 22
공시송달공고 23

회 람										
--------	--	--	--	--	--	--	--	--	--	--

▶ 발행 : 광양시 ▶ 편집 : 홍보소통실 (☎797-2713, 행정2713)

「광양시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전부개정규정안 입법예고

「광양시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을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6년 7월 9일

광 양 시 장

1. 자치법규명: 광양시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2. 입법취지(개정이유)

- 우리 시 기간제근로자 채용 시 사전심사제도를 거쳐 채용하기 위하여 규정 개정 필요
- 현행 노동관계법령과 배치되는 규정 내용의 삭제 및 법적 명시 사항 중 누락된 내용을 반영하여 실무 적용의 명확성 제고를 목표로 함

3. 주요내용

- 근로자 채용 사전심사제 도입(제5조 전면개정)
- 채용절차 합리화(제6조 개정)
- 보수 조항 현실화(제4장 개정)
- 모성보호 및 일·가정 양립 지원 규정 마련(제21조 신설)
-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 신설(제7장 신설: 제26조, 제27조)
- 표창·징계 기준 및 절차 명문화(제8장 신설: 제28조~제30조)
- 별지 제1호(기간제근로자 예산편성 사전협의 요청서)서식 수정
- 별지 제3호(근로계약서)서식 수정
- 별지 제8호(서약서)서식 수정

4. 입법예고

- 예고기간: 2026. 7. 9. ~ 7. 27.(21일간)
- 예고방법: 시보 및 시 홈페이지 게재

5. 일부개정 규정안: [붙임2]

6. 의견제출

이 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7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광양시장(참조: 총무과 인사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서면(직접방문), 팩스, 우편, 전자우편

라. 의견제출할 곳

- 주 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 시청로 33, 총무과 (우 57785)
- 전 화: 061-797-2724
- 팩 스: 061-797-2579
- 전자우편: dongchan313@korea.kr

※ 우편(전자우편) 제출 시 의견 제출 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 붙임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서식) 1부.
2. 광양시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전부개정 규정안 1부.

광양시 위생업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광양시 위생업소 등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광양시 자치법규의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13일

광 양 시 장

1. 일부개정이유

- 상위 근거 법령에 따라 위원회 구성 시 성별을 고려하도록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성별 균형 참여를 확대하고 양성평등 정책 실현에 기여

2. 주요내용

- 제5조제1항 본문 중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을 “별지 제1호서식 및 제1-1호서식”으로 한다.
- 제8조제1항 중 “구성한다”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로 한다.

3. 입법예고

- 예고기간: 2026. 7. 13. ~ 2026. 8. 3.(21일간)
- 예고방법: 시보, 시 누리집 게재

4. 일부개정 조례안: “붙임”

5.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8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광양시장(참조 : 보건소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할 곳

- 1) 주 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 인덕로 1100, 광양시보건소 (우 57741)
- 2) 전 화: 061-797-4142
- 3) 팩 스: 061-797-4158
- 4) 전자우편: furmi27@korea.kr

다. 의견 제출방법 : 서면, 팩스, 직접방문 등 가능

6. 기 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양시보건소 식품위생과(☎061-797-412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2. 광양시 위생업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3.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

광양시 고시 제2026-185호

시도 대1호선 도로구역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변경)고시

광양읍 덕례리 일원 ‘시도 대1호선 도로개설공사’ 구역에 대해, 「도로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 (변경)결정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변경)고시합니다.

2026년 7월 15일

광 양 시 장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 내용

① 구분	② 종류	③ 노선번호	④ 노선명	⑤ 위치	⑥ 면적	⑦ 기점	⑧ 종점	⑨ 주요 통과지	⑩ 총연장(km)
당초	시도	대1호선	시도 대1호선	광양읍 덕례리	21,030㎡	광양읍 덕례리 (1129-21)	광양읍 덕례리 (992-5)	광양시 광양읍 덕례리	0.48km
변경	시도	대1호선	시도 대1호선	광양읍 덕례리	21,225㎡	광양읍 덕례리 (1129-21)	광양읍 덕례리 (992-5)	광양시 광양읍 덕례리	0.48km

2. 도로구역 결정 사유: 광양읍 덕례리 일원 도로 개설을 통해 인근 공동주택 밀집지역 교통난을 해소하고 교통사고를 사전 예방

※ 변경 사유 : 지적공부 등록 사항 정정으로 인한 면적 변경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2025. 7. ~ 2028. 7.(도로구역결정 고시일~3년)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총 29필지 A=34,523㎡ (편입: 21,030㎡)

총 28필지 A=21,225㎡ (편입: 21,225㎡)

* 상세: 별첨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광양시청 도로과

첨부서류

도로구역과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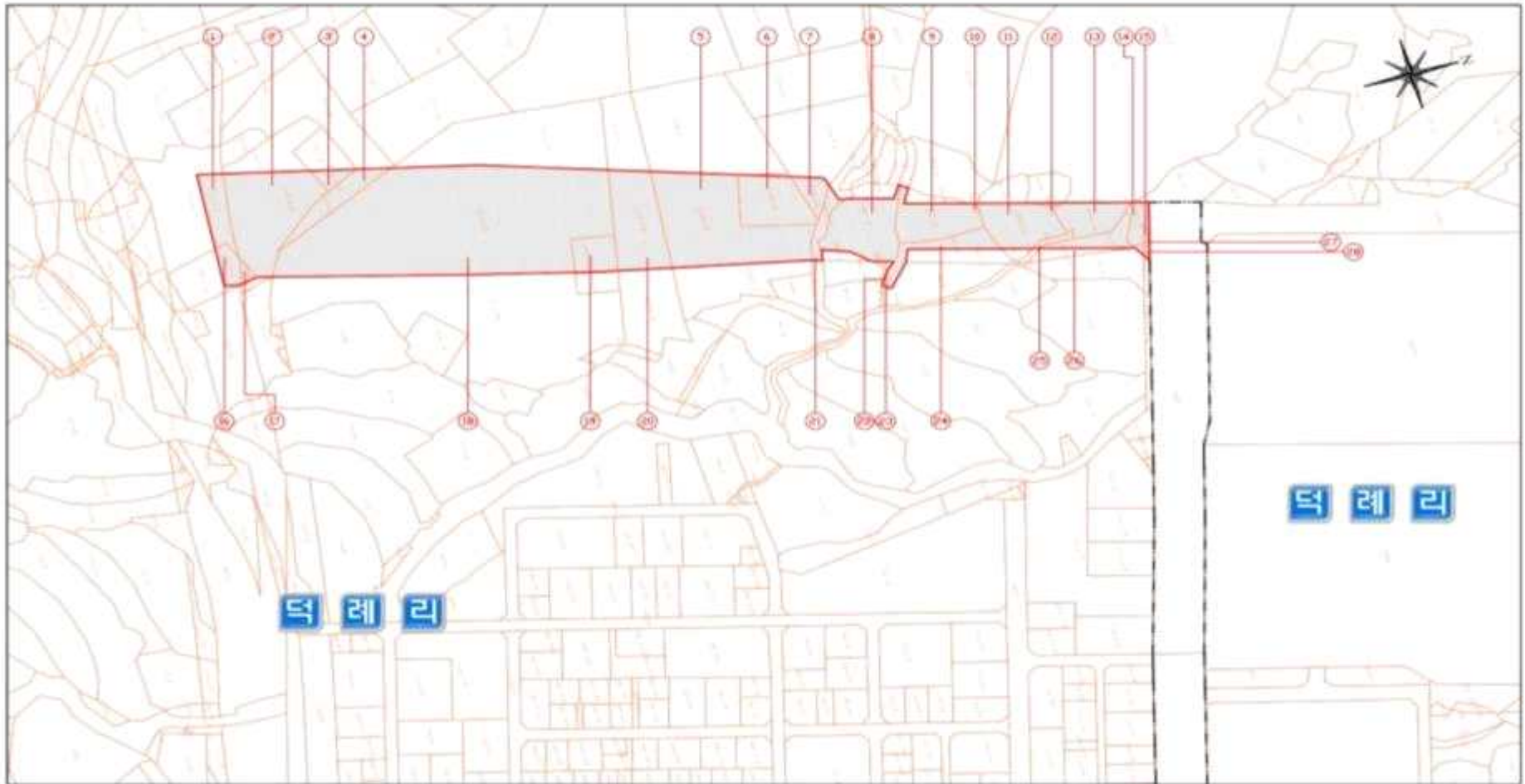
※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조서

일련 번호	지번	지목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토지소유자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 소	권리 관계	
계	29필지		34,523	21,030						
계	28필지		21,225	21,225						
1	1129-21	도	453	453	국	기획재정부				
2	1129-18	전	1,829	1,829	박**	전라남도 순천시 장선배기길 **				
					박**	전라남도 광양시 금호로 **				
					박**	전라남도 순천시 남정2길 **				
					박**	전라남도 순천시 삼산로 **				
					공	광양시				
3	1129-20	전	128	128	공	광양시				
4	산111-8 산111-9	임 임	2,615 519	1,171 519	장**	서울시 마포구 상암산로1길 **				
					주식회사 그**	전라남도 순천시 조례2길 **				
5	산111-5	임	2,152 0	28 0	이**	서울 관악구 신림동 **				
6 5	산109-2	임	2,600	2,600	이**	광양시 군장길 **				
					공	광양시				
7 6	산109-1	임	926	926	공	광양시				
8 7	산108-6	임	213	213	김**	광양시 진상면 백학로 **				
					김**	전라남도 순천시 해룡면 신대로 **				
					김**	전라남도 순천시 해룡면 좌야로 **				
9 8	998-1	전	1,073	1,073	공	광양시				
10 9	996-1	전	798	798	공	광양시				
11 10	995-11	중	4	4	공	광양시				
12 11	994-2	전	806	806	공	광양시				
13 12	993-1	답	22	22	공	광양시				
14 13	산105-1	임	525	525	공	광양시				
15 14	992-5	전	209	209	공	광양시				
16 15	992-2	전	19	19	공	광양시				
17 16	1129-22	도	195	195	국	기획재정부				
18 17	1129-4	전	58	58	공	광양시				
19 18	산110-1 산110-7	임 임	17,097 8,047	7,172 8,047	박**	광양읍 칠성리 **	국**	서울 중구 남대문로2가**	가압류	
					이**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	박홍인	순천시 저전동 **	가압류	
					황**	전라남도 순천시 팔마1길 **	정순애	광양읍 칠성리 **	가압류	

일련 번호	지번	지목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토지소유자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 소	권리 관계	
					주식회사 금**	전라남도 순천시 장평 4길 **	안창식	광양군 옥곡면 선유리 **	가압류	
					정**	전라남도 순천시 해룡면 신대로 **	구완서	이리시 남중동 **	가압류	
					정**	전라남도 순천시 상사면 마륜길 **	염득선	광양읍 목성리 **	가압류	
							박연자	광양읍 덕례리 **	가압류	
20 19	산110-6	임	415	415	공	광양시				
21 20	산110-4	임	1,311	1,311	공	광양시				
22 21	1588-17	구	208	208	국	기획재정부				
23 22	999-3	전	5	5	공	광양시				
24 23	999-5	도	6	6	공	광양시				
25 24	997-2	전	428	428	박**	광양시 광양읍 덕례리 **				
26 25	1586-2	도	64	64	국	기획재정부				
27 26	1021-7	전	339	339	진주**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덕례리**				
28 27	991-3	전	3	3	공	광양시				
29 28	1021-6	전	22	22	진주**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덕례리**				

용 지 도 (1/1)

SCALE : A1 = 1/1,000
A3 = 1/2,000



공 사 명	시 설 명	용 지 용 도	축 측	시 설 일 자	도 면 명	도 면 번호
시도 131호선(제철차량용차-북대역전철역) 건설공사	광 양 시	(국) 도로 건설공사	A1 = 1/1,000 A3 = 1/2,000	2025.	공 정 명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⑭ ⑮ ⑯ ⑰ ⑱ ⑲ ⑳ ㉑ ㉒ ㉓ ㉔ ㉕ ㉖ ㉗ ㉘ ㉙ ㉚ ㉛ ㉜ ㉝ ㉞ ㉟ ㊱ ㊲ ㊳ ㊴ ㊵ ㊶ ㊷ ㊸ ㊹ ㊺ ㊻ ㊼ ㊽ ㊾ ㊿	도 면 명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⑭ ⑮ ⑯ ⑰ ⑱ ⑲ ⑳ ㉑ ㉒ ㉓ ㉔ ㉕ ㉖ ㉗ ㉘ ㉙ ㉚ ㉛ ㉜ ㉝ ㉞ ㉟ ㊱ ㊲ ㊳ ㊴ ㊵ ㊶ ㊷ ㊸ ㊹ ㊺ ㊻ ㊼ ㊽ ㊾ ㊿
					도 면 명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⑭ ⑮ ⑯ ⑰ ⑱ ⑲ ⑳ ㉑ ㉒ ㉓ ㉔ ㉕ ㉖ ㉗ ㉘ ㉙ ㉚ ㉛ ㉜ ㉝ ㉞ ㉟ ㊱ ㊲ ㊳ ㊴ ㊵ ㊶ ㊷ ㊸ ㊹ ㊺ ㊻ ㊼ ㊽ ㊾ ㊿	도 면 번호 56

광양 도시관리계획(와우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 마동 1999번지 일원의 광양 도시관리계획(와우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제50조에 따라 결정 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승인 사항을 고시합니다.

2026. 7. 16.

광 양 시 장

1.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용도지역 결정 조서(변경없음)

구 분		면적(㎡)	구성비(%)	비고
합 계		636,363.9	100.0	
주거 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27,503.8	4.3	
	제2종일반주거지역	238,149.7	37.4	
	제3종일반주거지역	183,426.0	28.9	
	준주거지역	140,059.0	22.0	
자연녹지지역		47,225.4	7.4	

나.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변경없음)

도면 표시번호	구역명	위치	면적 (㎡)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10	와우2지구	와우지구 일원	636,363.9	-	636,363.9	

다.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조서

1) 토지이용계획 : 변경없음

2) 기반시설계획 : 변경없음

3)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

4)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 등에 관한 계획 : 변경

가) 단독주택용지(변경)

(1) 일반형 : 형태, 건축선 변경

도면 표시 번호	위 치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	H1~H48	형 태	• 건물형태, 배치 등 - 단독주택 배치는 가능한 남향배치 권장 • (기정)지붕형태, 옥탑 등 - 건축물의 옥상부의 자연스러운 경관을 유지토록 지붕형태는 경사지붕 권장 - 지붕의 구배는 10분의 3이상 10분의 7이하가 되도록 계획 - 옥탑(계단실), 물탱크 등의 건축설비 및 구조물 설치 시 지붕과 조화를 이루거나 차폐되어야 함 - 지상층 사용을 위한 옥외계단을 설치할 수 없음 • (변경)지붕형태, 옥탑 등 - 건축물의 옥상부의 자연스러운 경관을 유지토록 지붕형태는 경사지붕 권장 - 경사지붕으로 계획된 경우 구배는 세로:가로 = 1:1~1:3이 되도록 권장 • 외관 - 1층에 샷터, 대문 설치시 투시형으로 설치를 권장 - 발코니는 미돌출형으로 설치하되 돌출형으로 조성시에는 덧붙임 등 디자인된 형태로 계획하여 미려한 경관추구 - 에어컨 실외기는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하고, 외부 노출시에는 디자인된 차폐시설을 갖춘 실외기 설치공간을 건축시 함께 설치하며, 보행통행 및 미관식생애의 영향을 고려하여 도로 전면부 설치 지양 • 담장 - 담장을 설치할 경우 높이 1.2m이하의 투시형이나 생울타리 설치를 권장 • 기타사항 및 구체적인 사항은 시행지침 및 경관계획 보고서 참조
		건축선	• 도면참조 [완충녹지변(H22, H26, H36, H41, H46, H48) 4m ⇒ 삭제]

(2) 블록형 : 형태 변경

도면 표시 번호	위 치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	H49	형 태	• 건물형태, 배치 등 - 단독주택 배치는 가능한 남향배치 권장 • (기정)지붕형태, 옥탑 등 - 건축물의 옥상부의 자연스러운 경관을 유지토록 지붕형태는 경사지붕 권장 - 지붕의 구배는 10분의 3이상 10분의 7이하가 되도록 계획 - 옥탑(계단실), 물탱크 등의 건축설비 및 구조물 설치 시 지붕과 조화를 이루거나 차폐되어야 함 - 지상층 사용을 위한 옥외계단을 설치할 수 없음 • (변경)지붕형태, 옥탑 등 - 건축물의 옥상부의 자연스러운 경관을 유지토록 지붕형태는 경사지붕 권장 - 경사지붕으로 계획된 경우 구배는 세로:가로 = 1:1~1:3이 되도록 권장

도면 표시 번호	위 치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	H49	형 태	• 외관 - 1층에 샷터, 대문 설치시 투시형으로 설치를 권장 - 발코니는 미돌출형으로 설치하되 돌출형으로 조성시에는 덧붙임 등 디자인된 형태로 계획하여 미려한 경관추구 - 에어컨 실외기는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하고, 외부 노출시에는 디자인된 차폐시설을 갖춘 실외기 설치공간을 건축시 함께 설치하며, 보행통행 및 미관식생애의 영향을 고려하여 도로 전면부 설치 지양 • 담장 - 담장을 설치할 경우 높이 1.2m이하의 투시형이나 생울타리 설치를 권장 • 기타사항 및 구체적인 사항은 시행지침 및 경관계획 보고서 참조

나) 공동주택용지(변경없음)

다) 준주거용지(변경) : 허용용도, 형태 변경

도면 표시 번호	위 치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	C1~C26	용 도	• 허용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 제3호제1종 근린생활시설 - 제4호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제외) -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집회장 중 사행성용도 제외) - 제6호의 종교시설 - 제7호의 판매시설 중 상점 - 제9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제외) -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학원 - (기정)제11호의 노유자시설 중 아동관련시설 - (변경)제11호의 노유자시설 - 제14호의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 제18호의 창고시설(물류터미널 제외) -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세차장,매매장,운전학원 및 정비학원 • 불허용도 - 허용용도외 용도 - 학교보건법 제6조(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에 포함되는 시설 - 청소년보호법 제2조 제5호 가목의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
-	C1~C26	형 태	• (기정)지붕형태, 옥탑 등 - 지구 중심활동 공간으로서 역할과 중심지에 위치하는 입지성을 고려하여 가로경관, 주변 자연환경과 조화로움을 갖도록 유도 - 옥상부 조경 및 휴게공간 조성을 권장 - 지붕의 구배는 10분의 3이상 10분의 7이하가 되도록 계획 - 옥탑(계단실), 물탱크 등의 건축설비 및 구조물 설치 시 지붕과 조화를 이루거나 차폐되어야 함 - 지상층 사용을 위한 옥외계단을 설치할 수 없음 • (변경)지붕형태, 옥탑 등 - 건축물의 옥상부의 자연스러운 경관을 유지토록 지붕형태는 경사지붕 권장 - 경사지붕으로 계획된 경우 구배는 세로:가로 = 1:1~1:3이 되도록 권장 • 외관 - 1층에 샷터 설치시 투시형으로 설치를 권장 - 건축물 2층이상부터 벽면 후퇴 권장 - 에어컨 실외기는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하고, 외부 노출시에는 디자인된 차폐시설을 갖춘 실외기 설치공간을 건축시 함께 설치하며, 보행통행 및 미관식생애의 영향을 고려하여 도로 전면부 설치 지양 • 담장 - 담장을 설치할 경우 높이 1.2m이하의 투시형이나 생울타리 설치를 권장 • 기타사항 및 구체적인 사항은 시행지침 및 경관계획 보고서 참조

- 라) 주차장용지(변경없음)
 - (1) 단독주택용지 내(변경없음)
 - (2) 준주거용지 내(변경없음)
- 마) 교육시설용지(변경없음)

5) 기타 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변경

- 가) 교통처리계획(변경없음)
- 나) 건축한계선 및 저층구간에 관한 계획(변경)

도면 표시 번호	위 치 (가구번호)	계 획 내 용	비고
-	대로변	• (기정)대로변(대로3-14호선, 대로3-12호선, 대로3-16호선, 대로 3-38, 광로2-8) 건축한계선 지정(2-4m)을 통해 보행자의 안전 및 운전자의 시야를 확보 • (변경)대로변(대로3-14호선, 대로3-12호선, 대로3-16호선, 대로3-24호선) 건축한계선 지정(2m)을 통해 보행자의 안전 및 운전자의 시야를 확보 • 그 외 대지내 이면도로에는 건축한계선 지정(1m)을 지정	세부사항 도면참조

- 다) 차폐조경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라.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결정(변경)

1) 총칙 : 변경

기정	변경
제5조(용어의 정의) ① 본 지침에서 공통으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7. 대지내 공지 및 보행통로에 관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라 생략)	제5조(용어의 정의) ① 본 지침에서 공통으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7. 대지내 공지 및 보행통로에 관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라 생략) 7의2.(신설) “전면공지 조성기준 및 방법”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조성하여야 한다. 가. 자유로운 통행의 보장 • 전면공지에는 ‘보행지장물’을 설치할 수 없다. 단, 광양시 건축위원회가 인정한 보행지장물의 설치에 예외로 한다. 나. 경계부 처리 • 전면공지는 연접한 보도 및 도로(보도가 없을 경우)와 높이 차가 없이 조성하여야 한다. 이때 전면공지와 보도에는 차량 출입 및 주정차를 금지한다. 다만, 맹지 등 부득이한 경우 차량출입을 허용할 수 있다.

기정	변경
	• 연결한 녹지의 기능이 보행자 통행에 있는 경우 전면공지에는 보행지장물 설치를 지양하고 단차 없이 조성하여야 하고, 녹지의 기능이 차폐 또는 경관형성에 목적이 있는 경우 녹지의 조경계획과 유사하게 조성한다. • 광양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예외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다. 포장 • 경관 및 공공부문에서 시행한 보도의 재료와 포장패턴을 우선적으로 준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5조(용어의 정의) 8. 교통처리에 관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라 생략)	제5조(용어의 정의) 8. 교통처리에 관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라 생략) 마. (신설) “보행 지장물”이라 함은 보행자의 식별성과 접근성을 저해하는 담장, 환기구, 주차장 등의 시설물과 건물외벽이나 지하층으로부터 보행을 방해하는 물체(개폐식 창호나 출입문, 지하층 상부, 주유관, 배수관 파이프, 맨홀 뚜껑 등)의 돌출 등 보행 및 보행흐름에 지장을 주는 시설물을 말한다.

2) 민간부문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 변경

기정	변경								
제2장 제7조(건축물의 용도제한에 관한 사항) ④ 용도분류 제한표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th>건축용도</th></tr> </thead> <tbody> <tr> <td>준주거 시설 용지</td><td> • 허용용도 · 제3호제1종 근린생활시설 · 제4호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제외) ·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집회장 중 사행성용도 제외) · 제6호의 종교시설 · 제7호의 판매시설 중 상점 · 제9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제외) ·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학원 ·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중 아동관련시설 · 제14호의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 제18호의 창고시설(물류터미널 제외) ·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 세차장, 매매장, 운전학원 및 정비학원 • 불허용도 - 허용용도의 용도 - 학교보건법 제6조(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에 포함되는 시설 - 청소년보호법 제2조 제5호 가목의 청소년출입 · 고용금지업소 </td></tr> </tbody> </table>	구분	건축용도	준주거 시설 용지	• 허용용도 · 제3호제1종 근린생활시설 · 제4호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제외) ·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집회장 중 사행성용도 제외) · 제6호의 종교시설 · 제7호의 판매시설 중 상점 · 제9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제외) ·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학원 ·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중 아동관련시설 · 제14호의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 제18호의 창고시설(물류터미널 제외) ·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 세차장, 매매장, 운전학원 및 정비학원 • 불허용도 - 허용용도의 용도 - 학교보건법 제6조(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에 포함되는 시설 - 청소년보호법 제2조 제5호 가목의 청소년출입 · 고용금지업소	제2장 제7조(건축물의 용도제한에 관한 사항) ④ 용도분류 제한표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th>건축용도</th></tr> </thead> <tbody> <tr> <td>준주거 시설 용지</td><td> • 허용용도 · 제3호제1종 근린생활시설 · 제4호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제외) ·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집회장 중 사행성용도 제외) · 제6호의 종교시설 · 제7호의 판매시설 중 상점 · 제9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제외) ·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학원 · 제11호의 노유자시설 · 제14호의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 제18호의 창고시설(물류터미널 제외) ·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 세차장, 매매장, 운전학원 및 정비학원 • 불허용도 - 허용용도의 용도 - 학교보건법 제6조(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에 포함되는 시설 - 청소년보호법 제2조 제5호 가목의 청소년출입 · 고용금지업소 </td></tr> </tbody> </table>	구분	건축용도	준주거 시설 용지	• 허용용도 · 제3호제1종 근린생활시설 · 제4호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제외) ·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집회장 중 사행성용도 제외) · 제6호의 종교시설 · 제7호의 판매시설 중 상점 · 제9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제외) ·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학원 · 제11호의 노유자시설 · 제14호의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 제18호의 창고시설(물류터미널 제외) ·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 세차장, 매매장, 운전학원 및 정비학원 • 불허용도 - 허용용도의 용도 - 학교보건법 제6조(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에 포함되는 시설 - 청소년보호법 제2조 제5호 가목의 청소년출입 · 고용금지업소
구분	건축용도								
준주거 시설 용지	• 허용용도 · 제3호제1종 근린생활시설 · 제4호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제외) ·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집회장 중 사행성용도 제외) · 제6호의 종교시설 · 제7호의 판매시설 중 상점 · 제9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제외) ·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학원 ·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중 아동관련시설 · 제14호의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 제18호의 창고시설(물류터미널 제외) ·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 세차장, 매매장, 운전학원 및 정비학원 • 불허용도 - 허용용도의 용도 - 학교보건법 제6조(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에 포함되는 시설 - 청소년보호법 제2조 제5호 가목의 청소년출입 · 고용금지업소								
구분	건축용도								
준주거 시설 용지	• 허용용도 · 제3호제1종 근린생활시설 · 제4호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제외) ·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집회장 중 사행성용도 제외) · 제6호의 종교시설 · 제7호의 판매시설 중 상점 · 제9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제외) ·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학원 · 제11호의 노유자시설 · 제14호의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 제18호의 창고시설(물류터미널 제외) ·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 세차장, 매매장, 운전학원 및 정비학원 • 불허용도 - 허용용도의 용도 - 학교보건법 제6조(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에 포함되는 시설 - 청소년보호법 제2조 제5호 가목의 청소년출입 · 고용금지업소								

기정	변경
제4장 제13조(전면공지) (② 생략) ① 지구단위계획에 의하여 보도와 접하는 획지경계선에서 일정거리이상 이격하여 건축한계선이 지정되어 있는 경우로서 획지경계선과 건축한계선 사이의 공지조성은 다음의 조성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전면공지는 보행자통행이 가능한 구조로 조성하여야 하며 보도로서의 기능을 담당할 수 있도록 전면보도의 조성방법에 따라야 한다. 2. 건축한계선에 의해 생기는 전면공지의 바닥은 기존 보도의 높이와 같게 하며,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을 주는 쓰레기적치장, 담장 등의 장애물을 설치해서는 아니된다. 단, 광양시 건축위원회가 인정한 옥외시설물의 설치에 예외로 한다. 3. 포장패턴 조성시 공공부문의 보도패턴을 준용하고, 개별포장 선정시 인접지역의 포장패턴과 조화를 고려하여야 하며 바닥은 내구성 있는 재료로 포장하여야 한다.	제4장 제13조(전면공지) (② 생략) ① 지구단위계획에 의하여 보도와 접하는 획지경계선에서 일정거리이상 이격하여 건축한계선이 지정되어 있는 경우로서 획지경계선과 건축한계선 사이의 전면공지 조성은 ‘시행지침 총칙 제5조(용어의 정의) 제①항 제7의2호’를 따른다.
제5장 제14조(건축물의 외관) ① 건축물의 1층 바닥 높이는 대지내 공지 또는 보도와 가능한 단차가 없도록 다음 각호 규정에 따른다. 1. 건축물의 1층 바닥 높이는 접한 보도 또는 도로와 20cm이상의 단차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성한다. 2. 경사지의 경우 접한 보도 또는 도로의 높이는 높은 쪽을 기준으로 한다. 3. 광양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예외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5장 제14조(건축물의 외관) ① 1층에 여러 개의 점포가 있는 경우 개별 점포로의 출입만을 위한 계단 또는 경사로를 각각 설치해서는 아니 되며, 1층 바닥의 마감높이는 지형적 이유 등으로 인해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접한 보도 또는 도로의 평균 지반고와의 차이를 20cm 이내로 한다.(단, 1층이 주거용도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② 광양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예외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5장 제16조(건축물의 형태) (①, ⑤~⑧, ⑩ 생략) ② 옥외계단 등은 건축물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다양한 재료와 색채를 사용하여 건축물과 일체감 있게 계획해야 하며, 지상층 사용을 위한 옥외계단은 설치할 수 없음. ③ 옥탑(계단실), 물탱크 등의 건축설비 및 구조물 설치시 지붕과 조화를 이루거나 차폐되도록 설치해야 한다. ④ 지붕형태는 경사지붕 또는 디자인된 조형지붕으로 조성을 권장하고, 건축위원회 심의를 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⑨ 경사지붕의 경우 경사각을 3/10~7/10이내가 되도록 한다. 단, 광양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득할시는 예외로 한다.	제5장 제16조(건축물의 형태) (①, ⑤~⑧, ⑩ 생략) ② 건축물의 옥상부의 자연스러운 경관을 유지토록 지붕형태는 경사지붕을 권장한다. ③ 삭제 ④ 삭제 ⑨ 경사지붕으로 계획된 경우 구매는 세로:가로 = 1:1~1:3이 되도록 권장한다.
제6장 제22조(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련 기준) (①, ③~⑤ 생략) ② 점포주택은 근린생활시설과 주택을 분리하여 주차대수를 산정하도록 하여 용도별 주차 수요를 반영한다.	제6장 제22조(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련 기준) (①, ③~⑤ 생략) ② 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을 혼합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근린생활시설과 주택을 분리하여 주차대수를 산정하도록 하여 용도별 주차수요를 반영한다.

3) 공공부문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 변경없음

광양시 도로구간(1차 종속도로) 설정 고시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제12조 규정에 따라 광양시 도로구간 설정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7월 15일

광 양 시 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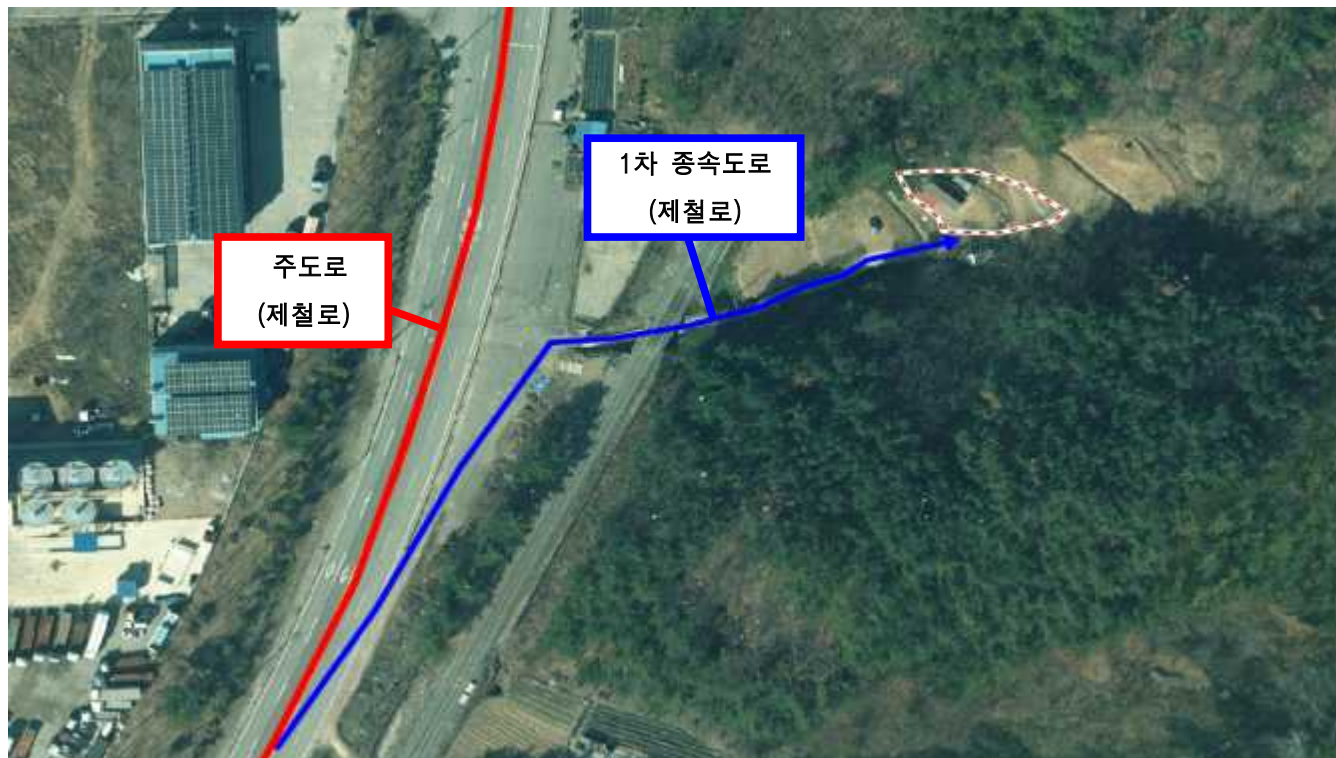
1. 고 시 일: 2026. 7. 15.(수)
2. 고시방법: 시보, 시홈페이지 등
3. 고시내용: 도로구간(1차 종속도로) 설정(붙임조서 참조) 2건
4.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양시청 홈페이지(www.gwangyang.go.kr)를 참고하거나 광양시청 민원지적과(☎061-797-338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도로구간 설정 조서(도면 포함) 1부. 끝.

▣ 도로구간 설정 조서

연번	도로명	도로구분	행정구역	도로구간					기초간격 (m)	기초번호		도로명 부여사유	비고
				시작지점	종료지점	중심선	연장 (m)	폭 (m)		시작	끝		
1	제철로	로	광양읍	광양읍 초남리 696	광양읍 초남리 695-3	도면 참조	198.96	3	20	273-1	273-20	법정리명에서 인용	

▣ 도로구간(중심선) 위치도



도로구간 설정 조서

연번	도로명	도로구분	행정구역	도로구간					기초간격 (m)	기초번호		도로명 부여사유	비고
				시작지점	종료지점	중심선	연장 (m)	폭 (m)		시작	끝		
1	돌고개길	길	봉강면	봉강면 지곡리 811-2	봉강면 지곡리 812-1	도면 참조	54.31	3	20	131-1	131-6	법정리명에서 인용	

도로구간(중심선) 위치도



도로명주소(건물번호) 개별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 7. 15.

광 양 시 장

○ 도로명주소

구 분	고 시 대 상	고시조서	비 고
도로명주소 (건물번호) 부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 성황수동로 10 외 2건	별지참조	
	아 래 빈 칸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양시 민원지적과(☎797-3389)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26. 7. 15.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에 의거 공법 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앞으로 공공기관에 민원신청 및 서류제출 시 도로명주소를 사용해야
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 기관에서 도로명
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5조 및 제26조에서 정
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제8조제2항에 의거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
에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도로명주소(건물번호) 고시 대상

연번	업무구분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고시일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 사유
계	건 물 번 호 부 여 3 건					
1	건물번호 부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 성황동 1856-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 성황수동로 10 (성황동)	2026071 5	202102 10	도시개발사업 지구 내 마을지명에서 인용
2	건물번호 부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 광양읍 목성리 632-4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 광양읍 개성3길 8-8	2026071 5	200810 01	행정리명에서 인용, 일련번호식 부여
3	건물번호 부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 마동 1169-8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 눈소2길 6 (마동)	2026071 5	202110 20	마을뒤 산등성이가 소가 누워있는 형국이라는 옛 지명 인용, 일련번호식 부여

공 시 송 달 공 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아니한 불법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60조제3항에 의거 원상회복명령 처분을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 7. 13.

광 양 시 장

1. 공 고 내 용 : 불법 개발행위에 따른 원상회복명령 촉구 공시송달 공고
2. 공 고 기 간 : 2026. 7. 13. ~ 2026. 7. 31. (18일)
3. 공 고 장 소 : 각 지방자치단체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4. 관 련 법 규 : 「국토계획법」 제56조, 제60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5. 공 고 대 상

	소 재 지	행 위 자	주 소 지	반 송 사 유
1	전라남도 광양시 중동 1576-1	설*중	전라남도 순천시 남가1길 〇〇	폐문부재 등

7. 송 달 내 용

- 「국토계획법」제60조제3항에 의거 원상회복 명령하오니 2026. 7. 31(금)까지 조치결과(전·후 사진 첨부 등)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위 기한까지 원상회복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국토계획법」 제133조제1항제6호 및 동법 제140조제1호 규정에 의거 사법기관 고발 등 불이익 행정조치가 이행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8. 기 타 사 항

- 「행정절차법」 제15조3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송달의 효력이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양시청 허가과 (☎061-797-198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 시 송 달 공 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2조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 신청에 대한 보완사항이 있어 알리고자 우편송달(등기우편)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 7. 13.

광 양 시 장

1. 공 고 내 용 : 개발행위 허가 신청에 대한 보완사항 알림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 고 기 간 : 2026. 7. 13. ~ 2026. 7. 31. (18일)
3. 공 고 장 소 : 각 지방자치단체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4. 관 련 법 규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5. 공 고 대 상

	소 재 지	수 허 가 자	주 소 지	반 송 사 유
1	전라남도 광양시 진상면 섬거리 85-25번지 외4필지	박*호	전라남도 광양시 금영로 〇〇〇	폐문부재 등

7. 송 달 내 용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2조에 의거 개발행위 허가 신청에 따른 보완사항에 대하여 2026. 7. 31.(금)까지 조치사항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위 기한까지 보완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거 민원문서의 반려 등 불이익 행정조치가 이행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8. 기 타 사 항

- 「행정절차법」 제15조3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송달의 효력이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양시청 허가과 개발행위팀 (☎061-797-19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 시 송 달 공 고

「건축법」 제20조(가설건축물) 및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2조(민원문서의 보완·취하 등)에 따라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에 따른 보완요구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 7. 15.

광 양 시 장

1. 공 고 내 용 :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에 따른 보완요구
2. 공 고 기 간 : 2026. 7. 15. ~ 2026. 7. 29. (15일)
3. 공 고 장 소 : 각 지방자치단체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4. 관 련 법 규 : 「건축법 시행령」 제20조 및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5. 공 고 대 상

구분	대 지 위 치	건 축 주	내 용	건 축 주 주 소	반 송 사 유
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 봉강면 조령리 827번지	이*건	- 가설건축물의 전면,후면,양측면 사진 제출 - 기 신고된 사항과 위치가 상이하므로 신고된 위치로 이동 후 사진 제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 봉강면 성불로 103*	폐문부재

6. 기 타 사 항

- 위 공고 내용은 「행정절차법」 제15조에 따라 공고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양시청 허가과(☎061-797-287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